#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50 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최수진·김선교·김종양

인요한 • 이인선 • 김예지

서지영 · 강선영 · 박준태

조정훈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임상시험수탁기관(CRO: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) 시장은 2018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452억 8,300만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며, 연평균 약 7.7%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는 717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CRO의 평균 매출액은 약 114억원 수준이나, 해외 CRO의 평균 매출액은 379억원에 달해 약 3배의 매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. 제약회사들에 따르면,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 CRO의 신뢰도와 인력 부족임.

이에 국내 CRO 또한 이 법의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고,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, 포상금 지급,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C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2조제 4호·제5호,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).

###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"임상시험수탁기관"이란 임상시험과 관련된 의뢰자의 임무나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의뢰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위임받은 개인이나 기관을 말한다.
- 5. "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"이란 제1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임상시험수탁기관을 말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 지원계획

제18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의 인증에 관한 심사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8조의3(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의 인증) ① 혁신형 임상시험수탁 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8조의2에

따른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③ 인증의 방법・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그 밖에 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의 인증서와 인증마크, 지위의 승계, 인증의 유효기간, 인증의 취소, 자료의 제공, 청문, 인증 유형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2, 제7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혁신형 제약기업"은 "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"으로, "제약기업"은 "임상시험수탁기관"으로 본다.
- 제18조의4(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 지원)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의 전문인력 양성, 연구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0조제1항 중 "제약기업을"을 "제약기업 및 임상시험수탁기관을"로한다.

제21조의 제목 중 "제약기업의"를 "제약기업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제약기업 또는"을 "제약기업, 임상시험수탁기관 또는"으로 한다.

제23조 중 "제7조의2제2항"을 "제7조의2제2항(제1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제10조제1항"을 "제10조제1항(제1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종합계획 수립 주기에 관한 특례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 | 제2조(정의)           |
|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    |                   |
| 1. ~ 3. (생 략)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4. "임상시험수탁기관"이란 임 |
|                     | 상시험과 관련된 의뢰자의 임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무나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를 대행하기 위하여 의뢰자로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부터 계약에 의해 위임받은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개인이나 기관을 말한다.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5. "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" |
|                     | 이란 제18조의3에 따라 보건  |
|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받은 임상시험수탁기관을 말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<u>한다.</u>        |
| 제4조(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    | 제4조(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  |
| 획) ① (생 략)          | 획) ① (현행과 같음)     |
|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   | 2                 |
|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1. ~ 6. (생 략)       | 1. ~ 6. (현행과 같음)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| 6의2. 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 |
|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계획              |
| 7. ~ 9. (생략)        | 7. ~ 9. (현행과 같음)  |
| ③ ~ ⑥ (생 략)         |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   |
| 제18조의2(임상시험지원센터의    | 제18조의2(임상시험지원센터의  |

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 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 ·운영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 5. (생 략)

 ② ~ ⑤ (생 략)

 <신 설>

| 설치 • 운영) ① |
|------------|
|            |
|            |
|            |
|            |
| <b>.</b>   |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의 인증에 관한 심사
-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3(혁신형 임상시험수탁 기관의 인증) ① 혁신형 임상 시험수탁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은 보건 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을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8조의 의2에 따른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<신</u>\_설>

제20조(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제20조(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)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으 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을 선

③ 인증의 방법·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④ 그 밖에 혁신형 임상시험수 탁기관의 인증서와 인증마크, 지위의 승계, 인증의 유효기간, 인증의 취소, 자료의 제공, 청 문, 인증 유형 구분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제7조의2, 제7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혁신 형 제약기업"은 "혁신형 임상 시험수탁기관"으로, "제약기업" 은 "임상시험수탁기관"으로 본 다.

제18조의4(혁신형 임상시험수탁 기관 지원)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임상시 험수탁기관의 전문인력 양성, 연구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대한 포상) ① ----------제약기업 및 임 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.

#### ② (생략)

제21조(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 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·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 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 의 수집·제공 등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.

제23조(벌칙)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·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5조(과대료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<u>제10조제1항</u>에 따른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.

| <u> 상시험수탁기관을</u>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|
| 제21조(제약기업 등의 국제협력            |
| 활동 지원)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약기업, 임상시험수탁기관 또             |
| <u> </u>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.</u>                     |
| 제23조(벌칙) <u>제7조의2제2항(제18</u> |
| 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            |
| <br>를 포함한다)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5조(과태료) ①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제10조제1항(제18조의3제4</u>      |
|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            |
| <u>한다)</u>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-----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